

전주지방법원 2021. 5. 26 선고 2020가단954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1나5785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1. 5. 26 선고 2020가단9543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

담당변호사 최대일, 이한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

변 론 종 결 2021. 4. 28.

판 결 선 고 2021. 5. 26.

주 문

1. 전주시 덕진구 E 대 349㎡에 관하여,

가. 피고 B은 유한회사 F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. 6. 27. 접수 제68807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,

나. 피고 C, D는 피고 B에게 그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. 1. 5. 접수
제1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식회사 G은 전주시 덕진구 H 일대 블록형단독주택용지[I]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을 모집한
후 추첨을 통해 각 수분양자에게 분양할 각 필지를 정한 후 해당 필지에 관하여 공급계약을
체결하였는데, 원고에 대하여는 ‘J(사업시행 후 분할되어 E로 지번 부여됨)’필지가, 피고 B에 대하여는
‘K(분할되어 L로 지번 부여됨)’필지가 지정되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.

나.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사업자 지위를 양수한 유한회사 F는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각
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위 주택용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치고 수분양자들과
각 대상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, 2016. 6. 24.경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
착오로 원고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L 토지를, 피고 B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E 토지를
매매목적물로 기재하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매매계약서에 기해 원고에게는 위 L 토지에
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, 피고 B에게는 위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
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피고 B은 2017. 12. 18.경 피고 C, D와 위 E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

후 2018. 1. 5. 피고 C, D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/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지분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피고 B 본인신문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 별개의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,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,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유한회사 F와 피고 B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던 것은 추첨을 통해 피고 B에 대한 분양대상 필지로 정해진 L 토지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,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

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. 피고 C, D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

지분이전등기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들은 위 E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유한회사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위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

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곽경평